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2017년 5차 보건의료분과 회의자료(5월)

구 분	보건의료분과
협의체 사회적 비전 & 미션	비전 : 시민이 주인되는 복지공동체 미션 : 시민의 복지상상이 현실이 되는 실천적 소통의 장
보건의료분과 목 표	- 수원시민의 신체·정신·사회·영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 건강 형평성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행복 실현
전략과제	- 수원시 건강형평성 증진 - 보건복지 연계체계 강화 및 활성화 - 보건의료분과 활성화

○ 일 시 : 2017. 5. 23.(화) 10:00 ~12:00

○ 장 소 : 지동 창룡창작센터

○ 주요내용

1. 인사 및 공유

1) 기관별 행사·정책 변동사항

2. 안건토의

1) 수원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점검 및 사회보장체계 마련 조사

2) 보건의료분과 2017년도 민관협력 공동사업

(1) 우리동네 이웃사촌 지킴이사업 추진사항 점검

(2) 무료이동진료 준비 및 역할분담

3) 지동 마을돌아보기(스탬프투어), 홍보물 게시

3. 차기회의 일정

1. 인사 및 공유

1) 기관별 행사·정책 변동사항 공유

○ 수원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대표협의체회의 : 5/24(수) 14:00, 시청 종합상황실
- 정책교육“한국의 사회보장체계 및 새정부 복지동향” : 6/2(금) 15:00~, 휴먼서비스센터
- 동협의체 워크숍 : 5/31(수) ~ 6/1(목)

2. 안건토의

1) 수원시 지역사회 네트워크 점검 및 사회보장체계 마련 조사

○ 목 적

- 지역사회보장 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의 욕구 반영 체계 점검
-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조직개편안 제시

○ 조사방법

- 기존 협의체 관련 연구 검토
 - 자체평가 보고서 및 관련 연구 등
- 수원시 협의체 구조 분석
- 타 지역 협의체 구성 및 지원 내용 분석
- 델파이 조사
 - 협의체 구조 및 활동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직개편안을 제시하는 데 유용함
 - 대상 : 협의체 위원
 - 조사방법
 - 1차 조사 (개방형 설문)
 - 2차 조사 (영역별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설문)
 - 3차 조사 (평균 제시, 다른 응답자의 의견 분포 고려하여 설문 응답)

※설문 작성

2) 보건의료분과 2017년 민관협력 공동사업

※ 그간의 추진사항 및 향후 일정

- 2017.2.21.(화) : 사업추진 자문-서호노인복지관, 지동행정복지센터
- 2017.3.21.(화) : 세부추진방법 논의(명은요양원)
- 2017.3.30.(목) : TFT회의-조사 질문지 개발(서호노인복지관)
- 2017.4.6.(목) : 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면담(지동 노을빛복지관)
 - 사업 설명 및 의견수렴, 협조요청
- 2017.4.20.(목) : 지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간담회(지동행정복지센터)
 - 사업 설명, 협조 요청
- 2017.4.26.(수) : 수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간담회
 - 자원봉사자 협조 요청, 의견 수렴

(계획) ⇒ 2017.5.23.(화) : 지동 마을돌기, 홍보물 게시(창룡창작센터)
⇒ 2017.5.25.(목) 10:00 : 동남보건대학교 봉사단 간담회
⇒ 2017.6.13.(화) 10:00 : 무료이동진료(제일교회)

(1) 우리동네 이웃사촌 지킴이사업 추진사항 점검

- 이웃 봉사자 모집
 - 홍보 : ❶지동 - 통별 게시판 안내문 부착, 현수막 게시
통장님 협조 요청
 - ❷학교 -중고등학교 협조요청 공문
 - ❸동남보건대
- 집중 홍보기간 :

- 참여 어르신 모집
 - 모집방법
 - ❶ 통장님 추천(동에서 협조요청), 방문 조사
 - ❷ 이동진료시 홍보, 모집
- 방문조사 : 기간

(2) 무료이동진료 준비 및 역할분담

- 일시 : 2017. 6. 12. (화) 10:00~12:00
- 장소 : 지동 제일교회 주차장
- 내용
 - ▷ 내과, 치과, 한의과(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 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 ▷ 치매 조기검진(수원시치매지원센터)
 - 대상 : 만 60세이상 수원시민
- 준비물품

구분	필요물품	
대기실	천막 2개, 의자 또는 돛자리, 다과(차), 포트, 사업안내 홍보물	안내 현수막 전기
치매검진	천막 1개, 책상(), 의자()	
진료		
기타		

- 대기실(천막 2개, 의자(?), 돛자리(?), 치매검진(천막 1개 별도)
- 책상, 의자, 천막 및 안내 현수막, 다과(차, 포트)
- 전기

- 역할분담
 - 대기실 :
 - ※ 사업안내, 접수처

○ 배치도



3) 지동 마을돌아보기(스탬프투어), 홍보물 게시

- 사업 안내 홍보물 게시
- 지동 내 시설(노을빛복지관, 작은도서관...)

<붙임 1> 참고자료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사회보장의 범위(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1) 협의체 참여 민간기관 현황

구분	계	대표 협의체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지역 분과	자활고용 주거분과	아동 분과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여성가족 분과	영유아 분과	교육 분과	청소년 분과	보건의료 분과	사회공헌 분과
계	188	18	19	15	11	13	17	14	15	14	13	14	12	13
종합복지관	33	1	6	6	1	-	3	2	2	-	4	4	2	2
노인 복지	이용시설 21	-	3	5	2	-	8	-	-	-	-	-	2	1
	생활시설 9	2	1	-	-	-	4	-	-	-	-	-	2	-
장애인 복지	이용시설 17	1	1	2	1	-	-	6	-	-	2	-	2	2
	생활시설 1	-	-	-	-	-	-	1	-	-	-	-	-	-
아동 복지	이용시설 4	-	-	-	-	4	-	-	-	-	-	-	-	-
	생활시설 5	-	-	-	-	4	-	-	-	1	-	-	-	-
여성 복지	이용시설 8	1	-	-	1	-	-	-	4	-	2	-	-	-
	생활시설 3	-	-	-	-	-	-	-	3	-	-	-	-	-
영유아기관	13	1	-	-	-	-	-	-	-	12	-	-	-	-
청소년기관	11	-	-	-	-	-	-	-	-	-	3	8	-	-
정신보건기관	8	-	3	-	-	1	1	2	-	-	-	-	1	-
(평생)교육기관	5	1	-	-	-	1	-	-	1	-	2	-	-	-
다문화기관	3	1	-	-	-	-	-	-	2	-	-	-	-	-
지역자활센터	5	1	2	-	2	-	-	-	-	-	-	-	-	-
기타	42	9	3	2	4	3	1	3	3	1	-	2	3	8

(2) 실무분과별 인원

구분	계	통합서비스 지원분과	지역 분과	자활고용 주거분과	아동 분과	노인 분과	장애인 분과	여성가족 분과	영유아 분과	교육 분과	청소년 분과	보건의료 분과	사회공헌 분과
전체위원	202	20	17	13	16	19	17	19	17	15	16	18	15
민간위원	170	19	15	11	13	17	14	15	14	13	14	12	13
비율(%)	84.2	95.0	88.2	84.6	81.3	89.5	82.4	78.9	82.4	86.7	87.5	66.7	86.7
공공위원	32	1	2	2	3	2	3	4	3	2	2	6	2
비율(%)	15.8	5.0	11.8	15.4	18.7	10.5	17.6	21.1	17.6	13.3	12.5	33.3	13.3

(1) 분과조정에 대한 인식

분과조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낮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중 분과위원 위촉/해촉 절차는 적절하다에 평균 3.91점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분과 수의 적절성이 3.82점, 분과구성의 적절성이 3.78점으로 나타났음.

〈표 2〉 분과조정에 대한 인식

구 분		평균 (표준편차)
분과 조정 인식	12개로 이루어진 현재 분과 구성은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78 (.716)
	분과위원 수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82 (.631)
	분과위원 위촉/해촉 절차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91 (.640)

(2) 분과구성의 부적절 이유 및 해결 대안

분과구성과 관련해서 부적절한 이유 및 해결대안으로는 분과의 통폐합, 조정, 축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분과 위원 수가 10~15명이 적당하다는 것,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 및 해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또한 한 기관에서 다수 분과 참여에 대해 고려해야하며,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분과구성 부적절 이유 및 해결대안 분과의 통폐합/ 조정/ 축소 필요함 분과위원의수는 10~15 적당하다고 생각됨 책임감을 높일 수 있도록 위촉 및 해촉 기준과 절차가 명확해야함 한 기관 에서의 다수 분과 참여에 대해 고려해야함 절차의 신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함

(3) 통합 조정해야 하거나 추가로 구성해야 할 분과

통합 조정해야 할 분과로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교육 간의 통합에 대한 의견이 많았으며, 영유아, 아동, 여성가족 간의 통합 의견도 있었음. 지역, 사회 공헌, 통합, 자활고용주거 간의 통합 의견도 있었음. 그 외에 자활고용주거 분과에서 주거를 분리해야한다는 것과 여성가족분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제안도 있었음. 추가해야 할 분과로는 환경, 노동/일자리, 다문화, 문화, 동협의회, 가족지원 분과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

통합 조정 및 추가 구성 분과	
통합 조정	영유아 + 아동 아동 + 청소년 청소년 + 교육, 아동+청소년+교육 영유아+아동+여성가족, 영유아+여성가족 지역+사회공헌 통합+지역 지역+자활고용주거 자활고용 - 주거 분리 여성가족분과 명칭 변경
추가	환경분과 노동/ 일자리 분과 다문화 분과 문화 분과 동 협의회 분과 가족지원 분과

3.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6월
- 장소 :